

李朝初期 倭人渡來에 대한 制度的 規制

全 秉 翼

An Institutional Approach into the Regulation Controlling the Flow of Japanese to Korea in the early Yi-Dynasty

Jun Byung-Ik

目 次	
1. 序 論	3. 倭人渡來에 대한 人國驗證
2. 李朝의 對日外交政策	4.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t seems that the fundament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riginated from the invasion of waegu (Japanese pirates).

In order to protect the invasion of waegu, the Yi- dynasty adopted pacificatory policies for them and encouraged them to be naturalized and treated their envoys and traders with hospitality.

As a result of the policies, the number of japanese entry increased and it became a financial burden to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had to adopt retrenchment and restriction policies towards them.

In this paper, the writer, approv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bove mentioned polices of the Yi-dynasty, describe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foreign policy towards Japan and further, attempts to criticize the pass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on the foreign policy towards Japan through the study of the entry permit which is considered to control the flow of Japanese to Korea.

1. 序 論

韓國歷史上 李朝時代는 對外關係의 範圍가 좁았던 時代였다. 단적으로 表現하면 李朝의 對外關係는 倭寇의 極端的 無去來에 출발하여 極端的 無去來關係(韓日合併)로 끝났고 또 朝貢에서

출발하여 朝貢에서 끝나는 二重의 性格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倭人渡來에 대한 李朝 當局의 統制策이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態度를 탈피하여 보다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開放策을 併用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아쉬움에 本題目를 택한 것이다.

李朝는 對日外交關係를 交隣政策에 두고, 進上奉獻이라는 名目으로 實質的이던 形式的이던 誠心屈從에만 만족하였고 日本側은 李朝政府가 自己들의 年例的이고 義務的인 援助國인 양으로 생각하고 그 횡포와 방자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로 因한 經濟的 獨占利益을 極大로 利用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李朝政府는 과도한 倭寇根性 中斷策의 일환으로 向化人 장려, 貿易倭人에 대한 豐盛한 接待로 날로 그 數가 증가되어 國家負擔이 莫重함에 이에 대한 統制는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筆者는 「事大交隣」 自体를 前提로 하면서 倭人 渡來에 대한 統制가 그때 그때마다 李朝政策 擔當者가 여기에 어떠한 對應策 말하자면 法規制方式을 어떻게 취하였는가를 論究하고, 나아가 그 規制体制의 性格을 파악하여 앞으로 法体制制定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종전까지 우리의 法史가 對內的인 것에 그 精力을 傾注하였던 것을 이제 對外的으로 그 認識을 轉換해야 할 時機가 올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 試鍊을 克服할 수 있는 規範確立이 곧 우리의 主体的 規範으로 되어 그 속에 발전할 수 있는 性向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方法에 依하여 論하려고 한다. 즉 ① 倭寇의 侵略根性에 대한 中斷策으로서의 李朝初期對日 外交關係를 分析하고, ② 倭人渡來에 대한 規制로 浦所設定, 倭館設置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研究는 다음으로 미루고 入國驗證인 書契, 文引, 行狀등에 대한 由來와 그 機能을 制度的인 面에서 研究 批判하고 運用面의 모순점을 몇가지 지적하려고 한다.

2. 李朝의 對日外交政策

李朝의 傳統的 外交政策은 「事大交隣」이란 말로 表現할 수 있다. 事大는 以小事大의 뜻이며 交隣은 隣國과 通交往來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內面的 歷史的 意義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事大는 반드시 朝貢을 포함하며 交隣에는 반드시 進上이 따른 것이다. 즉 事大인 中國은 李朝의 誠心順從으로 만족하고 李朝는 中國의 文化와 物資의 輸入으로 만족하였다. 또한 交隣인 日本과 女眞은 李朝에 대하여 政治的 從屬關係를 유지하고 進上에 대한 回賜로서 文物輸入이 그들의 課題였다. 더우기 李朝의 事大는 思想的이고 內面的인 精神의 所産이 아니고 가장 重大한 現實的 政治行動으로써 國內支配權 確立에 二重的인 抵當權 設定의 機能을 하였던 것이다¹⁾. 李朝初期의 對日外交關係는 倭寇의 極端의 無去來關係에서 출발하였다고 볼수 있다²⁾. 高麗王朝의 中期에는 日本의 大宰府가 每年 二隻의 進奉船을 派遣하는 定約이 成立하고 金州(金海)에

1) 韓國史(近世前期編)(震檀學會編) 107面~145面

2) 論文集 第九輯(海洋大學刊), 拙稿 李朝初期의 對日 非正常的 去來에 대한 法規制 3面 以下

客館을 두어 應接하고 있었으나 점차 多數의 倭人이 無秩序하게 往來하고 海賊行爲까지 恣行하게 되었다³⁾. 이러한 海賊行爲(去來拒否行爲)가 빈번히 恣行됨에 따라 그들의 性向의 獨特化를 위해 倭寇라고 固有名詞化 하였다⁴⁾. 이 倭寇의 掠奪根性이 더욱 擴大되어 高麗滅亡의 一個의 原因이 되었고, 倭寇의 토벌에 功이 컸던 太祖 李成桂는 攻遼不可論의 三論據로 지적하고 倭寇의 根絶이 國家至上政策으로 삼고 이것이 곧 安民之策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⁵⁾.

따라서 太祖 李成桂는 即位前 (1392年)부터

日本國相國承天禪住沙問某 端肅奉高麗國門下府 諸相國問下 仲冬初 貴國僧覺鎚來 將諸相國命達書于我征夷大將軍府 諭以海寇未息……今遣臣僧壽久 細陳情案 乞僉察然 不官 明德三年十二月 女七日⁶⁾

이라고 하여 使僧 覺鎚를 派遣하여 足利莫府와 外交交渉을 하고, 數次 倭寇의 禁制를 強力히 要求하였다. 나아가 太祖以下 歷代王들도 水軍整備 強化에 力點을 두고 體制整備·騎·步兵 및 騎船軍의 增加등의 여러面에서 關心을 集中시켰다⁷⁾. 이 結果 太宗 8年에

議政府請加各道兵船之數, 京畿左右道之數五十一隻 今加完二十五隻 全羅道之數八十一隻 慶尚道之數一百三十七隻 今加完五十隻 豐海道之數二十六隻 今加完二十隻 江原道之數十隻 今加完十隻 忠清道之數四十七隻 今加完三十隻 西北面之數四十隻 今加完十五隻 東北面之數三十隻 今加完五隻 上項船隻 觀察使以下各官 殘盛等差材木有無 轉輸難易 分棟完體造作⁸⁾

이라고 하여 各道兵船을 總計 185隻을 增加하여 613隻으로 強化한 것을 보면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겠다. 또 다른 한편 太祖 8年에

日本僧原海 率妻子來 稱精醫術 命長髮授 典醫博士姓平⁹⁾

이라고 하여 向化人장려, 貿易倭人 使送倭人들의 優待를 통한 倭寇의 侵略根性을 防止하는데 最大限으로 노력하였다¹⁰⁾. 이와 같이 李朝政府는 對日關係에 있어서 積極的 外交交渉·向化人장려·使送倭人 및 貿易倭人의 優待등으로 平和的 懷柔策을 수립하는 반면, 水軍整備強化를 도모하여 武力的 侵略을 闕乏함은 以善治善 以武制盜의 效果라 할 것이다.

李朝는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事大交隣이란 外交政策에 依하여 日本에 대하여 平和的인 外交使節을 派遣하여 外交交渉을 하는 한편 侵入倭寇를 掃蕩하고 使送倭人 및 貿易倭人에 대한 衣食, 文物의 厚賜, 向化人 장려 등으로 最大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結果 倭寇에서 投化倭(使送倭人, 向化倭人, 貿易倭人 등)로 크게 늘어났다. 이 현상은 高麗末의 倭寇의 極端的 無去來로 인한 我國之民에 대한 掠奪, 放火, 殺人, 強賣등으로 오는 國民들의 苦心을 終息시키고 倭國과

3) 金柄夏: 李朝前期 對日貿易研究 (韓國研究院) 1面

4) 金柄夏: 前掲書 3面 以下

5) 太祖實錄 卷1 卷首總首

6) 善隣國寶紀 卷上 後小松院 明德三年 壬申答朝鮮書, 李該涼: 對日交涉史研究 19面

7) 拙稿, 前掲書 11面~13面

8) 太宗實錄 卷15 太宗8年 3月 庚午條

9) 太祖實錄 卷12 太祖 8年 8月 甲辰條

10) 拙稿: 前掲書 13面~16面

의 正常的 通交關係의 수립에는 政治的으로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向化人에 대한 全般的인 衣食住 生活의 負擔, 使送 倭人 및 貿易倭人에 대한 厚한 接待規定으로 그 經濟的 負擔이 至大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과잉적 優待政策은 오히려 日本人의 오만성을 장려하는 結果가 되었다. 즉, 太宗實錄에

河演啓曰 投化倭人等來居我國一二年矣 而猶國家資生 其支費不資 請自今勿復糴 教曰此人等 初來我國 不習家產之時 宜給糧以補乏 既習我國之事而已 或其生可以耕田而食也 寄食我國 以爲恒例 則無窮之欲 何時而已乎¹¹⁾

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經濟負擔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憂慮하고 있다. 또 世宗 3年 正月 禮曹는 「日本國 諸島使者 絡繹驛路疲弊」라 하여 上京道路를 二道로 區分한 것을 提議¹²⁾ 할 정도로 그 오만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世宗 5年 10월에

慶尚道監司啓 倭客支持 各官雖當農月 客人來則臨時輸轉之應 米粃雜物多至二三十駄 其弊不小 請於客人 所泊乃而浦 富山浦兩處……從之¹³⁾

이라고 하여 使送倭인들이 빈번히 來航하여 官憲農민들의 疲弊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貿易商人의 來航은 해마다 繁盛하여 世宗 18년에는 즉,

……乃而浦 留居倭人等 與本島倭人潛通相約 夜乘小船預到海中島 商船至則 分騎而來 詐稱商倭 其數多至四五十¹⁴⁾

이라고 하여 規制에 違反하는 密貿易까지 盛行하였다. 또 다음해인 世宗 19년에는

自去冬于今 倭人之稱爲使者履至 每一船格倭三四十或五六十 留乃而浦者幾至千人 考其來獻之物 不過劍數柄 或有或無 有者亦不過 鹽蘆數石 其勢以不堪 僅而就食於我之¹⁵⁾

이라고 하여 食糧이 不足한 邊民과 好詐한 倭人들 때문에 經濟狀態가 아주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世宗 21年(1439年)은 倭人接待에 가장 힘겨웠던 해로 世宗이 禮曹에게 「宗貞盛與諸島 使道人支持便否」라고 下問한데 대한 答書에 「此年以來 倭使頻數 今年使人 無慮 一千三百餘人 難以支持」¹⁶⁾이라고 한 것을 보와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李朝政府는 이들 使倭送人의 接待와 貿易에 따르는 財政的 負擔을 節約하기 위하여 緊急財政制限政策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종래에 實施하던 過大한 過海糧과 滯在 糧料등의 贈與를 削減한다든가 혹은 上京을 制限하고 使送船의 大小 및 乘員數를 限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一例로 世宗 21년에

使送船分大中小及小小船 大船則格人四十名 中船則三十名 小船則二十名 小小船則十名 定爲常數 一依定數 給糧 其數外人 不許給糧之意開說……¹⁷⁾

11) 太宗實錄 권35 太宗 18年 3月 庚午條

12) 世宗實錄 권11 世宗 3年 正月 戊辰條

13) 世宗實錄 권22 世宗 5年 10 壬申條

14) 世宗實錄 권73 世宗 18年 閏 6月 申卯條

15)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正月 庚申條

16) 世宗實錄 권85 世宗 21年 正月 甲午條

17) 世宗實錄 권87 世宗 21年 4月 甲辰條

이라고 하여 使送船에 定員數를 定하고 定員數以外的 倭人에 대하여는 過海糧을 支給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船員定員이 不足할 때는 三浦의 恒居倭人과 結탁하여 船夫名儀를 詐稱하여 過海糧을 詐取한 것을 보면 倭人들의 奸惡性을 짐작할 수 있고¹⁸⁾ 다음의 渡來 倭人數나 그 接待費用의 莫重함을 볼때 倭人渡來에 대한 制限政策을 더욱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渡來倭인이 얼마나 될까를 대개 추찰하여 보면 世宗實錄에

議政府于曰 今有獻者云 對馬島人 絡繹往還 厥數猥多 故以春夏兩節 上京及留浦倭人數 言之 則 載至三千餘名¹⁹⁾

이라고 하여 春夏兩節에 三千名이라고 하니 秋冬까지 合算하면 적어도 五千名이 넘을 것이며 國王使 巨酋使의 一行까지 合하면 六千餘人을 넘었을 것이다. 世祖實錄에

……是歷日本國諸處 使送倭人 六千一百十六²⁰⁾

이라고 하여 一年에 使送倭인이 六千名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이 計算은 約條에 依한 것으로 貿易倭人을 合한 實際數字는 훨씬 上廻할 것이다. 즉 世宗 21年 10月 禮曹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來航者가 萬名에 達하고 그 支給米가 10萬石에 가까웠다²¹⁾고 하고 世宗 22년에는 富山浦는 商倭數가 너무 많아 防備危險의 우려가 되었다고 한다. 즉 世宗實錄에

禮曹判書 閔義生啓曰 慶尚道富山浦 恒居倭人六十餘戶 今來商倭無慮六千餘人 而營居船軍則 八百餘人 其正軍不過四五百人 倘事有變乃以數百人 何能爲乎 請加鎮軍以壯軍勢²²⁾

이라고 表現한 것을 보면 倭人의 渡來가 얼마나 많았으며 이에 따르는 弊害 또한 추측할 수 있겠다.

또 渡來倭人의 數가 莫重함과 아울러 倭人接待費用에 對한 그 弊害도 莫重하였다. 世宗實錄에

禮曹啓 日本國王使 使送上官人圭壽 其所來船十六隻 所率人五百二十三名 今還歸時 一朔糧料 及各船草苳 請之然上項人一朔料 則二百九石三斗 依數題給未便 今姑以半朔料一百四石九斗 草苳酌量入送 從之²³⁾

이라고 하여 國王使의 一行의 總數가 523名이란 막대한 數가 渡來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接待費用은 算入하지 않고 渡海歸還時에 過海糧 一朔分만 하더라도 209石 3斗나 되어서 (당시의 一石은 15斗) 半朔料로 하기위하여 104石 9斗와 其他 草苳등을 憵작하여 入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接待費用 가운데 米豆만을 計算하더라도 每日 一人當 白米 一升 5合, 黃斗 2升이었던 것이 그 후에 白米 2升 黃斗의 5升을 支給하였다²⁴⁾.

18) 世宗實錄 권87 世宗 21年 5月 辛酉條

19) 世宗實錄 권 世宗 20年 6月 乙丑條

20) 世祖實錄 世祖 元年 12月 己酉條

21) 世宗實錄 권87 世宗 21年 10月 丙申條

22) 世宗實錄 권88 世宗 22年 2月 庚辰條

23) 世宗實錄 권23 世宗 6年 2月 己酉條

24) 世宗實錄 世宗 8年 1月 丙辰條

따라서 世宗 元년에 倭人에 대한 米豆의 一年 所要量이 一萬餘石이 되었으며²⁵⁾ 그후 世宗 21년에는 一年支給量이 10萬餘石이나 되었다. 이 結果 倭人 接待로 늘어나는 國家財政負擔이 莫重하였으므로 심지어는 이를 調達하기 위하여 三年의 期限으로 東萊, 熊川, 蔚山등에서 田稅를 받아들여 渡來倭人들에게 支給하도록 하는 措置까지 마련 할 정도의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태도를 취하였다²⁶⁾. 이 以外에도 接待費에는 計算할 수 없고 말하자면 所要費用을 算出하기 힘든 公式的인 향연이 非—非再하였다. 즉 非公式的인 接待關係는 論外로 하고 違反事實이 없는 倭人이 到浦後로부터 浦所, 往還道路의 重要驛과 地點, 그리고 서울에서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이것도 使節의 계급에 따라 주연을 베풀게 하니 그 弊害 또한 至大하였다²⁷⁾.

이 以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弊害가 많았으므로 여러 方面에서 制度的으로나 法規制的으로 對日統制가 있어야 할 것이 要請되었다.

3. 倭人渡來에 대한 入國驗證

(1) 序

多數倭人の 來往으로 우리나라에 미친 經濟的 負擔이나 其他의 疲弊문제로 對日關係에 統制政策을 수립함은 當然한 結果다. 따라서 第一次으로 浦所指定 倭館設置등으로 入國을 制限함에 이르렀고 第二次으로 實施年代는 다르나 入國驗證을 通하여 渡來倭人の 制限 및 規制를 보다 엄격히 하였다. 즉 書契, 圖書, 文引 등과 같은 入國驗證을 所持하여야만 入國할 수 있고 無制限的인 渡來가 許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入國驗證은 倭人接待의 資格基準이 된 것이며 이것을 總稱하여 實錄에 나오는 名稱 記事를 그대로 使用하여 入國驗證이라 稱한다¹⁾.

이 入國驗證은 接待與否의 證明書가 되는 것으로 多數倭人の 渡來와 詐稱者들 때문에 大部分이 倭人들의 要請에 依하여 造給된 것이다. 倭人側에서 볼 때는 全般的으로 대단한 制約을 받았으나 入國이 許容된 者는 厚賜와 特惠的인 貿易이 可能한 海外旅卷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倭人數의 統制와 接待基準을 設定하는 入國許可書의 機能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統制力의 弱화로 인한 驗證의 考案 制定이 거듭 증가 하였다는 事實은 間接的으로 渡來倭人の 違反尺度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入國驗證에 대한 由來와 使用目的을 고찰 하려고 한다.

(2) 行 狀

行狀은 高麗 中期부터 對女真人 懷柔策으로 使用했으며 李朝때는 商賣들의 行商證明으로 使用하다가 倭人에 轉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太宗 7年 姜思德이가 管内各浦施設에 대한 改革 上書 意見 가운데

……興利倭船 於各浦散泊 窺貼兵船虛實 實爲未便 前番都節制使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 都萬

25) 世宗實錄 世宗 21年 6月 丙申條

26) 睿宗實錄 권1 睿宗 卽位年 10月 甲午條

27) 海東諸國紀 朝聘應接紀 使船定例集

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星州倉庫條

戶防禦之處到泊 今諸島倭船 不能通知其故 依前於各浦散泊 乞通諭各島渠首 行狀成給 使於輪萬戶在處到泊 以防詐爲 以一体統²⁾

이라고 하여 貿易倭船들이 出入이 아무 制限없이 各浦에 散泊하므로 左右道 都萬戶 在處인 富山浦와 乃而浦에 浦所를 設定하고 各島渠首에게 通諭하며 貿易船 渡來에 行狀을 발급하여 詐爲者를 防止하고 國家體統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그 始作이다.

行狀은 規格이나 記載內容은 實錄에 記錄이 없어 言及할 수 없으나 簡便한 渡來證明用으로 渡來者의 身分을 證明한 것일 것이며, 그러나 個人的인 履歷을 기술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使用하고 있었음이 文獻에 보인다³⁾. 그리고 行狀은 特殊旅行免狀의 역할을 하였다. 즉 東北面과 西北面 地方은 密貿易이 盛行하였으므로 이를 우려하여 太祖以後부터 商賣들이나 僧侶들의 來往을 경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各道 無行狀 往來者를 高발하면 賞을 주고 馬主는 依律處理하고 馬는 沒官하였던 것과 같이 國外旅行免狀의 機能을 하였다⁴⁾. 뿐만 아니라 國內에서도 여러가지 方面에서 使用되었다. 즉 貧利追求의 商人들이 諸道를 來往하면서 婦女들을 誘惑하여 財産을 奪내므로 이를 規制하기 위하여 東西北面에 가는 行商者들은 서울의 경우 漢城府에서 外國인 경우는, 觀察使나 都巡問使로부터 印信 行狀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者는 盜賊으로 規定하여 엄벌토록 하였다⁵⁾.

또 濟州島의 各官廳의 奴婢들과 軍丁들이 商船來往을 利用하여 도망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濟州島에 出入하는 者는 行狀을 提示토록 한 것은⁶⁾ 行狀을 통하여 國內旅行을 制限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行狀이 國內에서나 國外에서 全般的으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貿易船 出入에 대한 統制策으로는 그 效果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즉 興利倭船의 來往은 해마다 늘어나기 시작 하였으며 富山浦의 경우 商賣와 遊女들이 相當數 居住하여 使船과 興利船이 到泊하면 모여들어 醜態가 非一非再하고 그 弊害가 莫重하였기 때문이다⁷⁾.

(3) 書 契

書契는 公信力을 가지고 相互信憑하는 證據物인 것으로 現代의 外交關係에 있어서 國書나 外交文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書契가 언제부터 使用하였는가는 不明하나 「高麗史」에

遣前大司成 鄭夢周 報聘于日本 且請禁賊書曰⁸⁾

이라고 하여 高麗末期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7月 戊寅條

3) 權相老 張道斌 監修 故事成語事典, 行狀이란 各個人의 一生동안 履歷으로 中國古代에서 부터 使用되었다. 一種의 行蹟證明으로 倭人渡來에 적용 하였다.

4) 太宗實錄 太宗 6年 2月 乙丑條

5) 太宗實錄 太宗 7年 10月 乙丑條

6) 太宗實錄 太宗 17年 7月 辛酉條

7) 太宗實錄 太宗 18年 3月 壬子條

8) 高麗史節要 卷30 辛禡 3年 4月, 7月

그러나 이 記錄 以前에 進獻物이 있으면 반드시 書契가 있었을 같다. 그 理由로는 언제나 또는 規範이나 形式的인 節次와 傳統性을 좋아하는 당시의 我國爲政者 들이, 目的이 있어 派遣하는 使節에 書契가 없을 리 없기 때문이다.

또 中村榮孝氏는 行狀制度를 適用하여 渡來倭人을 統制했으나 效果가 적어서 書契를 적용한 것처럼⁹⁾ 主張하고 있으나 經國大典에

倭人到浦 邊將考書契 圖書 路引 依歲朝數上送¹⁰⁾

이라고 하여 書契가 맨먼저 記錄된 것을 보아도 倭人들에게는 書契가 먼저 적용된 것이며 行狀의 效果와는 아무관계가 없는 것 같다.

世宗은 己亥東征以後 書契의 全體的인 統制로 通交貿易政策을 강력히 實施하였다. 이 制度에 대한 禮曹判書 許稾가 言及한 것을 보면

書信以來 方許禮對 今後有欲行禮者 公宜照依前書施行 以嚴體統¹¹⁾

이라고 하여 書契의 効力을 알 수 있고 또, 通交貿易을 하려는 者는 各者 自由로써 書契를 가지고 움직임을 禁하고 九州探題나 對馬島主의 書契를 받아 來航토록 한 것이다. 그 理由는 對馬島는 倭寇의 소굴로 생각하고, 九州探題는 九州地方의 세력범위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興利目的만으로 來往하고 있던 商倭들은 이 制度로 인하여 差別을 받게 됨에 따라 不利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九州探題는 이 制度를 교묘히 利用하여 興利倭人을 自己使人 처럼 가장하여 빈번히 往來시켜 貿易利益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李朝政府는 渡來倭人을 修好使者와 貿易商人으로 區別하고 符驗을 따로이 造給할 것을 提案하여 每年 春秋 二回만 修好使를 派遣하는데 合意를 보았다¹²⁾. 그러나 종래의 書契가 無効化된 것이 아니고 이 후에도 書契가 계속하여 使用되어 왔다. 즉 倭人渡來의 制限策으로서는 効力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使送人의 渡來目的을 記入한 外交交書上의 目的으로서의 書契는 그대로 存續하였다¹³⁾.

그런데 특히 對馬島主의 書契制度를 보면 그 統制效果에 島主 自身の 積極的인 接待規制案을 提出하면서까지 協力하였고¹⁴⁾ 또 世宗 實錄에

禧曹啓 今來對馬島茂世使送客人 以書契違格 未得詣闕進上 請還給其書 令禮賓寺於所饋之其所持興利物件 令和賣而歸 從之¹⁵⁾

이라고 하여 書契樣式의 잘못으로 進上은 不許하고 和賣만을 行하고 돌아 간 것으로 보아 書契의 効力을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書契에 依한 倭人渡來의 統制策도 島內의 受職人과 受圖書人등의 直接通交 貿易을 할수 있는 者가 속출되자 이 制度만으로는 統制하기 힘이 겨워졌고 이에 因應하여 書契의 偽造 및 塗末改書하여 來往하는 者도 속출하였다. 이 結果 偽造에 대하여

9) 中村榮孝: 「室町時代の日鮮通交と書契及び 文引」(史學雜誌 42編 10號) 8面

10) 經國大典 禮曹 使書條

11) 世宗實錄 卷8 世宗 2年 7月 壬辰條

12) 世宗實錄 卷23 世宗 6月 戊午條

13) 世宗實錄 卷85 世宗 2年 4月 乙未條

14) 世宗實錄 世宗 18年 閏 6月 辛卯條

는 承政院 所藏의 書契를 接待場所인 三浦에 分置하여 書契가 올 때마다 이를 照會하며 만일 僞造인 경우 接待를 拒否하고¹⁶⁾ 還送케 하였고 受圖書人 및 受職人에 대하여는 별도로 文引制度로써 統制케 하였다.

(4) 圖 書

圖書란 官印을 단순히 印 또는 印章이라 하는데 대하여 私印이라는 뜻이며 書契가 使用되다가 그 違反者가 많아지자 通交來往의 證憑을 위해 我國에서 造給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순하는 圖書는 書契에다 造給圖書의 捺印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書로서의 書契에다 押捺하는 圖書나 純粹한 圖章으로서의 印과는 區別해야 한다. 이 造給圖書를 받은 者를 受圖書人이라고 한다.

圖書는 入國渡來時 所持하고 오는 書契에 押捺하여 書契의 詐稱僞造者가 아님을 證明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¹⁷⁾.

이 圖書도 對日緊縮制限政策의 하나이며 나아가 倭人懷柔策인데 그 始初는 즉,

日本國西海路美作太守淨存 遣人獻土物 仍請賜圖書 命禮曹造圖書 賜之¹⁸⁾

이라고 하여 淨存에게 賜給한 것이 實錄에 볼 수 있는 맨 처음 기록이다. 그리고 이 圖書는 渡來倭人の 入國時에 使用코자 함이 明白하고 그 受給者는 海東諸國紀에 依하면 大概가 通交上 功勞者인 島主의 要請이나, 受職者로서 受圖書의 恩典으로 受給하였다¹⁹⁾.

또 實際 圖書의 使用과 押捺表示까지도 書契의 어느便에 捺印하는가 그 位置를 明示하였다. 즉,

對馬州太守貞盛使送人 以貞盛之言 啓曰 因諸處之請不獲已 煩呈書契 自今 私請則貞盛名上 填圖書 非私請則職啣上 填之 審而從之²⁰⁾

이라고 하여 私請과 非私請의 區別을 위하여 捺印하는 場所까지도 確定하여 實施하였다. 그리고 所持渡來者의 造給圖書의 眞僞를 確認코자 禮曹와 三浦에 分置하여 對照토록 하였다²¹⁾. 또 刻名賜給된 圖書는 本人에 限하여 認定되며 讓渡는 認定하지 않았다가 明宗以後 世襲이 인정되었다²²⁾. 그러나 圖書의 僞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書契의 圖書捺印方法을 緊急事에 따라 三著二著, 一著의 順으로 하게 한 것이다²³⁾. 즉 三著圖書의 書契를 지참한 船舶은 島主 自身이 派遣하는 使送船이고 나머지 二著의 경우는 島中 各處에서의 使送船이고 一著는 주로 貿易商人들이 求請한 것이다. 아울러 이에 따라 過海糧의 差別이 두어졌으므로 實際 二著以下가 언제나 交涉對象이 된 것이다.

16) 世宗實錄 卷85 世宗 21年 10月 庚子條

17) 世宗實錄 4권 世宗 元年 6月 甲戌條

18) 世宗實錄 卷2 世宗即位前 11月 乙亥條

19)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對馬一岐島條

20) 世宗實錄 64권 世宗 16年 4月 戊申條

21) 世宗實錄 87권 世宗 21年 10月 庚子條 海東諸國紀, 朝聘應接紀, 給圖書條

22) 明宗實錄 9권 明宗 4年 3月 庚辰條

23) 世宗實錄 86권 世宗 21年 9月 甲戌條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受圖書人和 受職人과의 關係에 대한 것이다. 즉 李朝는 向化人の 장려로 인하여 受職倭人の 數가 증가되어 對日外交關係에 있어서 重大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⁴⁾. 海東諸國紀에 依하면 受職倭人和 受圖書人이 同一人이 된 경우가 있다²⁵⁾. 受圖書人和 受職人으로써 하여금 왜 同一人으로써 그 役割을 담당케 하였는가는 不明하나 추측컨대 受職人은 대개가 功勞者이므로 外交政策上 受圖書人이 되게 한 것 같다²⁶⁾.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圖書의 研究 結果를 보면 圖書는 그 違反이 많고 屢次적으로 屢次 사용되어 歲遣船定約에 따르는 驗證의 準據로 되는 것 以外에는 아무런 큰 意義가 없고 通信符 등의 符驗制度和 같은 使命을 다하는 데 不過했다.

(5) 文 引

文引이란 것은 文書에 記載한다는 점에서 一般的으로 身分證明書인 것만은 틀림없다²⁷⁾. 그리고 文引과 路引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 理由로는 成宗朝 申叔舟가 著書한 海東諸國紀의 朝聘應接紀 使船定數條에

諸使 皆受對馬島主文引 而後乃來

이라고 하여 來航者는 모두 對馬島主 宗氏의 文引을 받아 來航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때의 經國大典 待使客條에 「倭人到浦 邊將考 書契 圖書 路引 依歲朝數上送」이라 한 것을 볼 때 文引을 路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²⁸⁾

文引이 倭人渡來에 대하여 언제부터 使用하였는가는 記錄上 確言할 수는 없지만 世宗 10年에

傳旨 前此無文引 渡關津者 例杖八十 自今浦逃人外 並以違令論²⁹⁾

이라고 하여 文引이 使用되고 있음을 볼 때 아마 世宗 10年 以前에 文引使用에 대한 定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文引制度는 渡來倭人の 制限政策의 하나이겠으나 書契 및 圖書의 使用으로 僞造 및 違反事가 많아졌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다. 아울러 對馬島主에게 文引發給權을 부여함으로써 島主側으로서의 文引發給으로 인한 手數料의 징수가 용이하여 그들의 財源을 確保할 수 있다는 것과 李朝政府로서는 對日關係에 대한 外交政策을 一元化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中村榮孝: 鮮初圖圖書人考 (靑兵學叢 第八號) 106面~108面, 中村榮孝氏는 受職人이 受圖書人이 된 것은 衣服賜給, 受職人보다 優待의 結果라 한다.

25) 海東諸國紀 日本國紀의 諸條

26) 外交政策上 여러面에 利用코져 함에 있다. 藤九郎의 字符使用이 입증하고 있다. (成宗實錄 卷50 成宗 5年 12月 丙申條)

27) 文引을 渡航證明書라고 한다. (田中建夫: 「倭寇と勘合貿易」, 그리고 金柄夏氏는 通行確證書의 發行權者라기 보다는 通行確認者이기 때문이라 한다. (金柄夏: 前掲書, 19面 참조). 그러나 對馬島主는 文引適用에 대하여 즉 「以宗貞盛之言……皆給圖書然 不宜私相通交 如無我之文引 不許接待」 (世宗 17年 9月 丁丑條)라고 하여 島主는 自己文引을 갖지 않는 者는 接待를 하지말라는 要請으로 보아 確證이 아니고 發行임이 틀림없다.

28) 李鉉淙氏는 文引과 路引을 區別하고 있다.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50面

29) 世宗實錄 卷29 世宗 10月 1月 辛丑條

文引은 그 適用範圍을 擴大하여 즉,

臣恐諸處雜人 汎濫橫行 各處使送 及興利船 皆給路引 今後無路人者 勿許接待³⁰⁾

이라고 하여 諸處의 雜人을 禁斷할 目的에서 使船과 貿易船의 어느 것이나 路人을 갖지 않으면 入國을 許可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行狀이 興利船에만 適用되던 것을 使送船까지 適用擴大케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通航하려는 者는 누구를 막론하고 對馬島主의 文引에 依하여 統制되었 으며 이 制度가 組織的으로 運用된 것은 世宗 18年 부터다 . 즉,

貴島及諸嶺使送之人 須憑足下圖書文引以來 然中間不 無冒濫之弊 今後貴州及諸處來人 須分 大中小船 每船正官格人名數 總目開寫 給付 文引發送 方許禮接³¹⁾

이라고 하여 선박의 大小 正官 格人의 數를 記載토록 하여 倭人들의 奸詐한 行爲를 沮止케 하 였다. 그러나 世宗 21年에 禮曹啓에 依하여 對馬島의 文引發給의 單一化에 대한 例外規定을 두 게 되었다³²⁾.

이 밖에도 渡來倭人의 沿海地方의 出漁에 文引制度가 적용 되었다. 즉,

對馬島人釣魚者 受島主三著圖書文引 到知世浦納文引 萬戶改給文引 孤草島定處外 勿接橫待 行 釣魚畢 還到知世浦 還萬戶文引 納稅魚 萬戶於島主文引 回批差印 還付受驗 若無引者 稱 不勝風浪 潛持兵器橫行邊島者 以賊論³³⁾

이라고 하여 釣魚次 來航하는 對馬島倭人들이 島主의 三著圖書가 찍힌 文引 즉 釣魚文引도 있 었다. 그리고 이 文引制度는 倭人渡來에만 適用한 것이 아니라 國內의 여러 方面에 적용되었 다. 즉 經國大典 戶典 雜稅條에 「行商 給路引 收稅」라고 하여 懲稅用으로 使用되었다³⁴⁾.

以上과 같이 倭人渡來에 대한 通航制限政策으로 行狀, 圖書, 書契등은 僞造 또는 塗末改書한 것이 많으므로 禁防之策으로 첫째 文引定約을 履行하고 둘째 對馬島主以外的 文引을 禁止한 것, 셋째 九州 其他 本土諸處의 使送書契에 대하여는 眞僞를 검토한 다음 文引을 발급토록 한 것등 으로 文引을 통한 通航政策을 確立하게 된 것이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6) 象牙符

成宗朝에 이르러서는 새로히 象牙符란 驗證이 國王使의 要請으로 使用되었다. 즉,

……乃以象牙作符十枚 中分之 將右畔 就付回使 留其左以爲他日之驗 後當聘之時 必授符以道 貴朝大臣會通信於我者 如或有遣使 亦宜授符 以杜欺誑 豈非而相幸哉³⁵⁾

이라고 하여 象牙符는 그 材料가 象牙로 製作되었으며 이것을 中間을 조개어 兩國이 所有

30) 世宗實錄 권39 世宗 7年 10月 乙酉條

31) 世宗實錄 世宗 18年 閏 6月 辛卯條

32) 世宗實錄 世宗 21年 2月 乙卯條

33) 海東諸國紀 朝聘應接紀 釣魚禁約條

34) 大典會通(高麗大學校 出版部刊) 雜稅條에 行商에는 路引을 發給하고 稅를 징수하였다. 즉 陸商에는 每月 楮貨 8張 水商이면 大船 100張 中船 50張 小船 30張이라고 한다.

35) 36) 成宗實錄 권50 成宗 5年 12月 丙申條

하되 渡來者가 右半을 가지고 오면 我國側이 所有한 左半을 相互對照시켜 詐稱渡來者를 防止하려는데 있다. 이것은 元來 大臣使들이 國王使의 詐稱을 防止하고자 考案한 것인데 實際 接待面에 큰 差異가 없는 것을 보면 倭人의 奸詐한 經濟的 利益 追求方法의 속셈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象牙符의 內容을 보면 周圍가 4寸5分 圓經이 1寸5分の 크기이다 朝鮮通信 成化 十年 甲午라고 조각하고 左로부터 右로, 右로 第一로부터 第十까지 各個의 번호가 쓰여져 있다³⁶⁾.

이상과 같이 渡來倭人들의 入國驗證이 三浦倭亂前까지는 書契, 圖書, 行狀 文引등이 順次的으로 혹은 같은 時期에 혼용되다가 文引의 發給으로 一元化한 듯 하였으나 그후 다시 혼용되어 왔음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그만큼 渡來倭人들의 違反事項이 많았다는 증거이며 倭寇根性의 잠재적 반포라 하겠다. 특히 對馬島는 豐盛한 接待를 받는 保證證明書가 되고 朝鮮貿易을 獨占的으로 장악하는 條件이 된 것이다.

4. 結 論

李朝政府가 수립된 후로부터 對倭人接待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朝鮮 初期 對倭人 通交貿易을 根幹이 倭人渡來의 接待關係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변천 되었다.

李朝는 建國後 高麗의 滅亡原因中的의 하나가 되었던 倭寇의 極端的 無去來 關係를 斷絶시키는 데 最大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즉 倭寇의 禁防目的으로 太祖로부터 水軍整備強化에 노력하는 한편, 他面으로 投倭政策을 使用하며 向化人 장려, 貿易倭人등으로 변질시켜 以善治善 以武制盜로 그 目的을 達成하려고 했다. 이것은 世宗께서

彼若感歷賜米 不擾境 則雖歷給千石 猶可支也³⁷⁾

이라고 한것을 보아도 당시의 政策面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使送倭人 및 通交貿易人의 接待의 厚賜로 倭寇의 侵掠은 減少되었다 할지라도 優給, 厚待의 財政的 負擔은 倭寇被侵時나 못지 않게 어떤 政策의 案出이 필요했던 것이며 商倭·使送倭의 奸詐한 行動에 따라 規制形式을 날리 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倭人渡來에 대한 規制形式에는 浦所指定, 倭館設置, 接待規定 등이 있으나 筆者는 특히 入國驗證인 圖書, 文引, 書契, 行狀등에 대하여 그 由來와 適用範圍를 설명하면서 制度的인 面에서 그 規範性和 施行上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圖書 文引 書契 行狀등의 入國驗證이 對日外交關係에 있어서 倭人渡來規制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그 種別이 많았다는 것은 渡來倭人의 違反事項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李朝政府로서는 運用面에 不實이 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李朝政府로서는 倭人 渡來에 대한 그 經濟的 負擔이 크므로 積極的인 統制策인 緊縮政策의 수립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李朝政府는 倭寇 懷柔策이라는 一念 밑에서 너무나 受動的이고 消極的인 態度였고, 倭人들로서는 奸詐한 倭寇의 根性이 잠재적인 屬性으로 殘存하였기 때문에 法規制面에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7) 世宗實錄 권39 世宗 10年 2月 己巳條

李朝는 己亥東征을 除外하고는 對倭政策이 受動的 이어서, 事實 施行面에서 볼 때 좀 過度한 表現이겠지만 倭人들이 너무나도 違約이 많았으므로 接待와 貿易法規 그 自体가 一方的인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으며 積極的으로 倭人 規制策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倭人에 대하여 上國의 立場을 지키며 經濟的 援助國과도 같이 대하여 오던 차 賜給物品과 待遇가 以前과 다르다고 不滿을 했으니³⁸⁾ 이 問題로는 倭人에 대하여 厚待해야 된다는 原則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바도 아니거니와 이 정도까지 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以前까지 法規의 實効性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世宗 때부터 倭人들의 行動은 難測이며 人面獸心이라고 까지 하면서³⁹⁾, 倭人의 厚賜는 이들로 하여금 依存心을 낳게 하였고 나아가 緊縮의 運用의 모순이라 하겠다.

다음에 倭人들로서는 永久的 平和關係를 不願하였다는 事實이다. 즉 李朝의 懷柔策인 緩撫策 向化政策에 따라 無制限的으로 物品을 賜給하고 倭人들의 放從的인 行動을 어느정도 받아 들이면서 점차 平和的으로 전환시켰던 結果 倭寇로서의 生命을 不願하는 것보다 朝鮮의 政策에 順應하여 安全과 慾求充足의 방도가 되었기 때문에 倭寇가 감소 되었다 하겠다. (좀 極端的인 말이겠지만) 그러나 世宗께서도 倭人들을 가리켜 「人面獸心」이라고 한 것과 같이, 李朝政府의 厚賜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物質的인 利益追求와 文化를 輸入하기 위하여 渡來規則의 違反, 到着後의 波弊, 國家的인 體面을 생각하지 않는 非行등으로 違反事를 積出케 했다. 이 같은 事實은 그들의 倭寇根性이 잠재적 屬性으로 殘存했다는 것이다. (三浦倭亂이나 壬辰倭亂은 그 代表的인 것이다.)

以上과 같이 李朝初期의 倭人渡來에 대한 規制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對日外交 關係에 보다 나은 法制面이나 政策수립에 참고가 되고, 我國의 主體의 規範確立에 一考의 價値가 있게 할이다.

參 考 文 獻

- 1)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探究堂)
- 2) 東亞大學古典文化研究所, 高麗史節要(東亞大學出版部)
- 3) 申叔舟, 海東諸國紀(譯註)(韓日文化研究所)
- 4) 古典刊行會, 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文化社)
- 5) 法制處, 經國大典(韓日文化研究所)
- 6) 震檀學會編, 韓國史(乙酉文化社)
- 7) 善隣國寶記 卷上 壬申 答朝鮮書

38) 燕山君日記 권55 燕山君 10年 8月 戊辰條

39) 世宗實錄 권76 世宗 19年 1月 庚申條

(14)

1975年 4月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0輯

- 8) 金柄夏, 李朝前期 對日 貿易研究(韓國研究院)
- 9)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 交涉史研究(韓國研究院)
- 10) 權相老, 張道斌監修, 故事成語事典
- 11) 古典刊行會, 大典會通(高麗大學校出版部)
- 12) 史學雜誌, 42編 10號
- 13) 青丘學叢 第8號(青丘學會編)
- 14) 論文集 第9輯(海洋大學刊)

